통신인 구속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미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서울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무장공비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글을 통신상에 올려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윤석진, 신승우씨를 10월31일 구속하고 조덕진,이인홍씨를 연행했다. 더군다나 이번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33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글쓴이의 진의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내용만을 발췌하여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여론재판에 한몫 거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에 의해 자행되어온 통신검열 및 통신인 구속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선거기간중에 특정후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통신공간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유죄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한총련 CUG를 타당한 근거없이 폐쇄하였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또 하나의 통신인 구속사태를 접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공간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곳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곳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선동공간도 아니며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정보들과 의견들이 넘쳐나며, 한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 토론들이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통신공간에서의 의견개진을 선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신공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검열과 맥을 같이하는 이번 구속사건은 정부가 통신공간에서의 민주적인 토론과 기본적인 통신권리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일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처사이며 '정보화사회'라는 화려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신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한 예이다.

1996년 10월,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5대 목표'중 4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로 그 내용은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보통신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정부는 과연 그러한 '정보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 우리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이 아닌, 가장 '폐쇄적인 전자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21세기를 앞두고,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와 정보화사회라는 거창한 얘기들과는 반대로 실제 통신공간에서는 정부에 의한 검열과 통신인 구속이란, 시대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표현의 자유, 알권리, 프라이버시등과 같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강제적 수단으로 억압하는 '검열'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국가에 의한 통신검열과 구속사태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에 구속된 윤석진, 신승우씨의 석방과 통신인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스스로가 천명한 '국민의 알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상의 모든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통신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1996년 11월21일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이론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얼터너티브, 옴비법 대책회의, 전국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 연대 SING, 지식인 연대,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신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한국과학기술 청년회, 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 본부) [가나다 순]